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63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 임오경·차지호·김재원

진성준 • 한민수 • 서영교

윤후덕 • 박수현 • 임미애

이용우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 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

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 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를 "이하 "편집물등"이라"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등을"을 "또는 편집물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촬영물 또는"을 "촬영물, 편집물등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여 성적 <u>수치심</u> 이나 혐오감을	<u>불쾌감</u>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①
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u>수치</u>	볼쾌
<u>심</u>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u>감</u>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 (생 략)

<u>불쾌감</u>
②
이하 "편집물등"이라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u>등을</u>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 는 <u>수치심</u>을 유발할 수 있는 <u>촬영물 또는</u>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 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 략)

U Cheo ac Thee T
입ㆍ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u>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u>
금에 처한다.
⑤제4항
<u>.</u>
제14조의3(촬영물 또는 편집물등
<u>을</u> 이용한 협박·강요) ①
불쾌감
촬영물, 편집물등 또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펴진묵등 또는 보제묵은 구